이사회 규정

2024. 3. 26.

제1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에스케이씨(SKC)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기능)

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며,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.

제 4 조 (구성)

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
1. 감사위원회
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3. 전문위원회

가. 미래전략위원회

나. ESG위원회

다. 내부거래위원회

라. 인사평가보상위원회

③ 이사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전 항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.

⑤ 위원회는 매 분기 위원회 활동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한다.

⑥ 위원회는 위원회가 검토·심의·의결한 안건을 이사회에 의결 또는 보고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 이사회는 위원회가 검토·심의·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그 내용을 수정(감사위원회의 안건은 제외한다)하거나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4 조의 2 (경영철학의 실행)

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법을 개발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.

②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'SK'의 기업문화가 유지,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.

③ 이사회는 SK Brand의 사용에 있어 Brand 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.

④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와 SK 기업문화의 유지,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SK Brand와 기업문화를 함께 사용하는 타 회사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수립, 실행하도록 한다.

제 4 조의 3 (사외이사 협의체)

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경영 감독/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사외이사 협의체를 구성, 운영한다.

② 사외이사 협의체는 분기당 1 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사외이사 협의체는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(제7조의2 제1항의 정의에 의함)가 주재한다.

제2장 회의

제 5 조 (성립)

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
제 6 조 (구분)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
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.

1. 각 이사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고, 소집권자가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
2. 이사 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청구(별표 I)한 경우
3. 기타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 7 조 (의장)

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② 의장의 유고시에 의장대행자는 이사회가 정한다.

제 7 조의 2 (선임사외이사)

①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이사(이하 “선임사외이사“라 함)를 사외이사들 중에서 사외이사들이 자체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② 선임사외이사의 임기는 선임사외이사 본인의 이사 임기로 한다.

③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를 대표하여 사외이사 협의체를 주재하고, 필요시 사외이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전달한다.

④ 회사는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소집권자)

① 이사회는 의장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가 소집한다.

②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대행순서에 의한다.

제 9 조 (소집요구)

①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이사 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청구(별표 I)한 경우 소집권자는 이를 거부 또는 보류하지 못한다.

③ 이사회 소집요청 또는 청구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.

제 10 조 (소집통지)

① 이사회 소집통지(별표 II)는 회의개최일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서신, 전자우편,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하고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②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안건부의)

① 각 이사는 본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일 30일 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사회 간사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② 업무집행임원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을 경우 전결규정에 따른 승인을 득하여 회의 개최일 30일 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안건 통보시에는 부의취지 및 관련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④ 부의를 요청한 이사 또는 업무집행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안건 통보 후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부의 안건의 주요 내용을, 회의 개최일 3영업일 전까지 부의안을 이사회 간사에게 송부하고 이사회 간사는 이사에게 송부한다.

⑤ 이사회 간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안, 부의취지 및 관련사항을 접수하면 법적 사항 및 문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를 이사회에 부의한다.

제 12 조 (의안설명)

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에 대한 설명은 그 의안을 제안한 이사나 업무집행임원이 함을 원칙으로 하나, 필요에 따라서 해당 실무조직의 장이나 외부전문가 등이 할 수 있다.

제 13 조 (관계자의 출석 및 외부 자문)

①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② 각 이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제3장 결의

제 14 조 (결의방법)

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관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 15 조 (결의권의 제한)

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당해 안건에 관하여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4장 직무

제 16 조 (이사회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① 경영에 관한 사항

1.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안건 채택
2.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주주총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
3.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위원회 위원(감사위원회 위원 제외)의 선임 및 해임
4. 각 위원회(감사위원회 제외)의 결의에 대한 재결의
5.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
6.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7. 공동대표이사의 업무분장
8. 이사의 직위 결정 및 업무분장
9. 회사의 연간 경영계획(KPI 포함)의 수립 및 KPI 평가
10. 대표이사의 보수액
11. 상법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의 거래
12. 상법 제542조의9(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)의 거래
13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에서 정한 대규모내부거래. 단, 위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불구하고,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작은 금액의 100 분의 5 또는 100억원 중 낮은 금액 이상인 거래행위를 본 호에 의한 거래로 본다.
14. 상법 제397조(경업금지)의 승인 및 승인 없는 경업거래에 대한 개입권 행사
15.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의 승인
16.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
17.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
18.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
19. 지배구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
20.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
21.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22. 지점 및 사업장의 설치, 이전, 폐지
23.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

24.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기타 임원의 책임부담에 대한 구제제도의 도입

25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부여의 취소

26. 이 규정 제4조의2에서 정한 경영기본이념의 실행을 위한 회사 경영관리체계의 정립 및 수정

② 투자에 관한 사항

1. 회사 자기자본 1.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,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

2. 회사 자기자본 1.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 지분의 처분

3. 회사 자기자본 1.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 취득

4. 회사 자기자본 1.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영업양수도

5.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금액의 20% 이상 변동. 단, 변동금액이 20% 미만이더라도 회사 자기자본 1.5%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승인을 요함

③ 재무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

2. 중간배당

3. 자산재평가의 실시

4.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

5. 신주의 발행

6. 종류주식의 배당률 및 존속기간

7. 정관 제9조 제2항에 따른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

8.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

9.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, 소각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

10. 사채의 발행(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, 종류 및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 발행 위임 포함)

11.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
12. 정관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기준일의 설정에 관한 사항

13. 회사 자기자본 1.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

14. 회사 자기자본 1.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 담보제공, 동 금액 이상의 자산 처분

15. 회사 자기자본 1.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국내외 차입계약 (1년 이내의 단기차입 제외)과 회사 자기자본 1.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에 대한 대여 또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(보증채무를 부담하는 Letter of Comfort, 자금보충약정 포함)

16. 주금 미납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

17.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

④ 기타

1.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

2.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위임받은 사항

3.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

4. 10억원 이상의 기부. 단, 태풍, 홍수, 화재,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구호와 “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”에 따른 기부는 선집행 후 사후보고 할 수 있음

제 16 조의 2 (이사회 보고사항)

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회사의 중장기 전략 (Financial Story, ESG 추진 전략 포함)

2. 회사의 연간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

3. 회사의 분기별 경영실적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보고

4.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

5.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이사가 이사회에 보고를 요청하는 중요사항

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③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연 1회 보고하고,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연 1회 보고한다.

④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및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다.

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.

제 16 조의 3 (이사회 의결·보고사항의 위임)

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장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·보고사항 중 일부를 각 위원회에서 의결·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제1항에 의해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위임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위임한다.

가. 제16조 제2항 제16호 내지 제18호, 제24호에 의한 의결

나. 제16조 제1항 제12호 내지 제13호(감사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)의 거래 중 그 금액이 자기자본 1.5% 미만인 거래에 관한 의결

다. 제16조의2 제4항, 제5항에 의한 보고

2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ESG위원회에 위임한다.

가. 제16조 제4항 제4호에 의한 의결

3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사평가보상위원회에 위임한다.

가.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의결

제 17 조 (대표이사의 직무)

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본 규정에 의하여 위임·부여된 권한 하에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및 집행
2.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의 시행 및 집행
3.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이외의 제반사항의 결정 및 집행
4. 이사 및 업무집행임원에 대한 순차적인 권한의 재위임

제 18 조 (사후승인)

①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집행한다. 단, 집행 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사후승인을 득한다.

② 제1항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대내적인 효력을 상실한다.

제 18 조의 2 (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)

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외부 전문기관에게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칙

제 19 조 (사무의 처리)

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사무국을 둔다. 이사회 사무국장은

주관부서의 담당임원이 맡는다.

② 이사회 간사는 이사회 사무국장이 담당하며, 이사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원 중 1인을 보좌간사로 지명하여 이사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 20 조 (의사록)

이사회 간사는 의사의 안건, 경과,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에 관하여 의사록(별표 III)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본점에 비치한다.

부 칙 (1986년 4월 1일)

제1조 ① 본 규정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6년 9월 1일)

제1조 본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본 규정 제20조의 서명은 199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있다.

부 칙 (1999년 5월 6일)

제1조 본 규정은 1999년 5월 6일부터 제3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01년 4월 2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01년 4월 2일부터 제4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04년 11월 1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제5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05년 8월 30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제6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07년 6월 29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제7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08년 4월 18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제8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12년 3월 23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제9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단, 제11조제1항, 제12조, 제14조제1항, 제16조제2항제3호, 제5호, 제6호, 제8호, 제9호및 제10호, 제16조제3항제2호, 제13호 및 제17호, 제17조제4항, 제18조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년 3월 22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제10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15년 3월 20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제1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16년 8월 16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16년 8월 16일부터 제12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17년 2월 24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제13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17년 3월 24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제14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18년 3월 22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제15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18년 7월 23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제16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20년 4월 29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제17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 단, 제16조 제1항제27호의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년 3월 30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제18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22년 5월 26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제19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제2조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의미한다. 이하 “개정법”이라 한다) 제26조 시행 이후 본 규정 시행 이전 이사회가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승인한 건은 개정법 제26조의 대규모내부거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2022년 8월 24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제20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23년 5월 25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23년 5월 25일부터 제2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2024년 3월 26일)

제1조 본 규정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제22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
<별표 I>

이사회 소집요청서

1. 소집희망일시 : 년 월 일 시 분

2. 회의장소 :

3. 부의안건 및 사유
   가. 제목 :

   나. 내용개요 :

   다. 부의안건 : 별첨

20 . . .

청구인 이사 (인)

이사 (인)

이사 (인)

이사회 의장 귀하

<별표 II>

제 회 (정기/임시) 이사회소집통지서

제 회 이사회 소집통지서

1. 회의일시 : 년 월 일 시 분

2. 회의장소 :

3. 부의안건

   가.

   나.

4. 보고사항

20 . . .

이사회 의장 성명 (인)

이사

<별표 III>

제 회 (정기/임시) 이사회 의사록

1. 회의일시 : 년 월 일 시 분
2. 회의장소 :
3. 출석이사 : 이사전원 명 중 명

의장은 00시 00분 개회를 선언하고 의안심의를 시작함.

제 1 의안 :

제 2 의안 :

의장은 상기 의안을 별첨과 같이 심의하고 00시 00분 폐회를 선언함.
이상의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각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.

20 . . .

SKC 주식회사
이사회

의 장 (인)

이 사 (인)

이 사 (인)